

학교폭력 동영상·유서 들고 찾아갔지만... 경찰, 증거 더 가져오라며 유족 돌려보냈다

'고교생 죽음' 지난 1일 새벽 신고...광산경찰 미온적인 대응에 허탈 고민하던 유족 다시 112에 신고...동영상 토대 5명 가해 혐의 수사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광주일보 7월 5일 6면>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 동영상과 유서를 들고 찾아온 아버지에게 "증거를 더 가져오라"며 돌려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학교폭력 피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의 더딘 수사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메신저 대화목록 등이 삭제된 것을 비롯해 증거로 삼을만한 자료가 삭제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광주광산경찰과 피해학생 가족 등에 따르면 가족들은 고교생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건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뒤인 지난 1일 새벽 2시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며 경찰을 찾았다.

피해 학생의 부친 등 유족들은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아들 죽음이 학교폭력과 관련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유족들은 특히 경찰에게 아들이 살아있을 때 또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동영상 2개와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태블릿 PC에 남긴 유서 등을 직접 보여줬다.

경찰은 그러나 증거자료를 보고도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하고 싶다면, 지금 상태로는 부족하니 추가적인 학생들 증언 가지고 와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는 게 피해 학생 가족들 설명이다.

유족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장례를 치르던 중, 발인을 하루 앞두고 아들의 괴롭힘 동영상을 건네받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장례 절차를 중단하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니 더 가져오라"며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유족들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오전 7시 30분께 112로 신고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 소속 수사

지구대 경찰관이 유족에게 진술서를 받아갔고, 이후 사건이 담당 부서에 배당돼 현재 수사도 이어졌다.

피해학생 가족들은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누가 이런 경험을 해봤겠나"라며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경찰이 하라는대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 고민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족들은 경찰이 당시 상황을 부인한다면 반박할

자료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당시 112 신고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아들의 죽음에 대해 추가로 증언해줄 증인, 증거를 찾아다니고 있지 않았냐고 하소연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야간업무의 특성상 정식 접수가 어려우니 반려가 아닌 지도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서 방문이 두렵고, 법률적 상식이 수사기관에 비해 얇은 시민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대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 중 한명은 전수조사 당시에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고,

증거가 될 만한 SNS 상의 기록들을 지우고 있어 경찰이 가해자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직 경찰이 당시 새벽에 유족과 만난 것은 맞지만 '지금 경찰이 없을테니 정리가 된 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족들이 내보인 동영상과 유서를 보고 어떤 경찰관이 그냥 돌려보냈냐"고 부인했다.

한편, 광주광산경찰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 유족이 제출한 동영상 등을 통해 또래 학생을 5명에 대해 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시문화체험관 문 열었어오 8일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에 문을 연 시문화체험관에서 시민들이 VR을 체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염증질환을 암으로 잘못 진단 "병원 과실...1억2천만원 지급"

의료진이 염증질환을 암으로 잘못 진단, 하지 않아도 될 신체 부위를 잘라냈다면 환자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농사일을 하는 A(58)씨 부부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오른쪽 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자 전대병원을 찾았고 CT, 흡인세포 병리검사, PET 검사를 거쳐 '다발성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전이암 진단을 토대로 A씨의 양측 경부(목) 림프절, 침샘, 편도 등을 잘라내는 수술을 실시했다.

병원측은 그러나 수술 뒤 이뤄진 조직검사를 통해 '전이암'이 아니라 '급성 화농성 림프절염'으로 최종 진단을 수정했다.

A씨측은 병원측 오진에 따라 불필요한 절제술을 받아 신체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진이 암이 아닌, 급성 화농성 림프절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이암으로 진단해 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각종 검사가 이뤄진 15일 뒤 수술이 이뤄진 점을 들어 림프절염이 아닐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급하게 수술할 필요성을 인정할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농성 림프절염의 경우 전이암과 달리, 일반적으로 수술 없이 항생제 및 소염제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림프절염 환자에게 이뤄진 양측 경부 림프절-편도 절제 등은 불필요한 신체 침해가 되는데다,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A씨는 해당 수술 이후 어깨 움직임 제한, 승모근 위축, 견관절 근력저하 등의 후유장애 증상이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병원측은 A씨 부부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일부 지역 5일 연속 많은 비...산사태 대비해야

산간지역 각별한 주의 필요

전남 일부 지역에 5일 연속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5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한 지역은 장흥 597.5mm, 해남 578mm, 진도 542mm, 보성 504mm, 고흥 503.5mm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은 무려 5일 간 계속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로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산림 관계자들 설명이다.

산사태는 급경사인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류와 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돼 경사가 완만한 농경지와 주택가에 피해를 준다.

국립산림과학원측은 시간 강수량 30mm, 일 강수량이 150mm, 누적 연속 강수량 200mm 이상이면 산사태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특히 산간지역의 경우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거나 나오던 지하수가 멈추고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 등이 발생되면 산사태 발생 징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지난 6일 오전 6시께 광양 진상면 탄치마을에서

는 공사현장 경사면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주택 2채를 덮쳐 80대 노인 1명이 숨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 6일 지역별 강우예측 결과를 반영해 24시간 내 1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된 일부 지역에 산사태 '경계'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은 "비가 그쳤더라도 연일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토질에 따라 많은 양의 물이 머금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면서 "완벽히 토양이 마를 때까지 산사태에 대한 긴장과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황주홍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황주홍(69) 전 국회의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등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이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007만원을 제공했고 별교음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 돈을 지급한 근거도 없고 황 전 의원이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벌교 사무소도 실제 운영 활동을 했고 사무실 개설 시기가 선거보다 훨씬 이전인 점, 선거 기간 사무실 운영비가 크게 늘지는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유사 선거사무소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